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 월 27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82호

붙임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걷거나 가볍게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담걷기 주간”이란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주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담걷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쓰담걷기 주간)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쓰담걷기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